

4)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있는가?

	첫째로 어려움	둘째로 어려움	셋째로 어려움	넷째로 어려움	계
도서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이 있다	3	5	3	2	13
도서관 출입문(개찰구) 폭이 좁거나 이용하기가 불가능하다	7	2	0	0	9
서가 사이가 좁아 도서 열람이 어렵다	1	4	3	2	10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유도블럭이 없다	0	2	3	3	8
도서관 2층이상을 이용할 수 없다	0	3	2	0	5
도서관에 점자도서와 전자도서등이 없다	8	1	0	0	9
도서관 건물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으나, 손잡이 설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1	0	1	4
도서관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폭이 너무 좁아 이용하기가 어렵다	0	0	0	0	0
기 타	1	0	1	1	3
계	22	18	13	9	61

5) 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어려움	둘째로 어려움	셋째로 어려움	넷째로 어려움	계
식당 입구에 계단이 있는데다 손잡이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3	10	2	0	15
식당 출입문 폭이 좁다	2	0	3	0	5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유도블럭이 없다	0	3	1	2	6
셀프서비스라서 혼자서 이용이 어렵다	22	4	0	1	27
2층이상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	0	3	2	1	6
식당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폭이 너무 좁아 이용하기가 어렵다	0	0	1	2	3
기 타	1	0	3	1	5
계	28	20	12	7	67

6) 강의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있는가?

	첫째로 어려움	둘째로 어려움	셋째로 어려움	넷째로 어려움	계
강의실 입구에 계단이 있는 데다, 손잡이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6	4	3	0	13
강의실 출입문 폭이 좁다	0	3	0	1	4
강의실을 이용할 수 있는 유도블럭이 없다	7	0	2	2	11
건물내의 이동(복도)공간이 좁다	5	3	0	4	12
2층이상에 있는 강의실을 이용할 수 없다	3	2	1	1	7
강의실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학업이 어렵다	2	1	4	1	8
강의실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폭이너무좁아 이용하기가 어렵다	1	0	1	0	2
기타	1	2	0	1	4
계	24	14	11	10	61

7)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어려움	둘째로 어려움	셋째로 어려움	넷째로 어려움	계
화장실 입구에 턱이 있다	1	2	1	0	4
화장실 출입문 폭이 좁다	1	3	1	4	9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유도블럭이 없다	5	1	1	1	8
화장실 내가 좁다	8	1	3	0	12
화장실 내에 손잡이가 없다	3	4	1	0	8
세면대에 손잡이가 없다	2	0	0	1	3
기타	1	3	0	0	4
계	21	14	7	6	48

8) 학교 건물 내 모든 계단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첫째로 어려움	둘째로 어려움	셋째로 어려움	넷째로 어려움	계
계단의 경사로가 매우 가파르다	7	4	1	2	14
계단의 폭이 너무 좁아서 이용하기가 어렵다	6	7	1	0	14
계단 옆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1	4	4	1	10
계단에 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4	0	1	3	8
기 타	0	1	1	0	2
계	18	16	8	6	48

9) 주차시설과 관련한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어려움	둘째로 어려움	셋째로 어려움	넷째로 어려움	계
장애인용 주차장이 없다	5	0	1	2	8
장애인용 주차장의 폭이 너무 좁아 이용하기 어렵다	2	2	1	2	7
장애인용 주차안내판이 없다	3	3	1	1	8
주차장이 장의실과 너무 떨어져 있다.	3	1	3	0	7
기 타	5	2	0	0	7
계	18	8	6	5	37

10) 공중전화 시설과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첫째로 어려움	둘째로 어려움	셋째로 어려움	넷째로 어려움	계
장애인용 공중전화가 없다	10	2	2	3	17
공중전화 박스에 턱이 있다	3	10	1	0	14
동전 삽입구가 너무 높다	1	2	5	2	10
공중전화가 건물안에 없다	9	1	3	3	16
기 타	1	1	1	0	3
계	24	16	12	8	60

11) 강의와 관련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첫째로 어려움	둘째로 어려움	셋째로 어려움	계
10분간의 휴식시간에 다른 건물 등으로의 이동이 어렵다	14	2	1	17
점자도서가 구비되지 않아 학업이 어렵다	8	1	1	10
기 타	6	3	0	9
계	28	6	2	36

토론 1

강병근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1. 건물 이용자로서의 장애인

건축의 1차적 기능은 거의 생태적인 것으로 천후(天候) 혹은 다른 자연의 힘으로부터 인간의 기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Shelter)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계획의 주요 대상은 인간, 그 중에서 도 이용자 그 자체이며, 계획의 방향은 이용자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반면 건축의 2차적(副次的) 기능은 1차적 기능에 부과하여 개인 혹은 사회 조직체의 일반 욕구(혹은 요구사항)가 충족되어져야 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품위와 상징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개성적인 묘사(描寫)까지도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건축의 부차적 기능이 변질되어 1차적 기능보다 더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건축계획의 방향이 당초의 계획대상이었던 건물의 실제 이용자를 거의 무시하고 건물의 소유자인 건축주의 엉뚱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만 급급하게 되는데, 이 때 건축주가 이용자 자신일 경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매우 큰 사회적 문제까지도 제기될 수 있으며 건축의 사회적 책임이나 도덕성은 그 소재를 파악할 길이 없게 된다. 문제중 가장 가까운 예를 든다고 하면, 병원을 관리자의 기능중심에 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건축할 경우, 그 병원은 영리, 의료 중심의 건축물이 되고 실제 병원 존재 의의를 부여하는 환자나 그들을 간호하는 사람들은 마치 정비공장에서 마구 다루어지는 고장난 기계나 공구들처럼 소외(疏外)되기가 쉽고, 주택의 경우에 건축주나 건축가가 이용자의 입장에서 주거본래의 기능인 거주, 휴식 중심의 공간창출에는 관심이 없거나 적고, 건물의 재산적 가치 즉, 투자가치 중심으로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다 보니 현재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값비싸고 불편한 집’이 속출하게 된다. 교육시설에서의 이용자 소외 현상은 병원이나 주택에서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아도 보이나 실제 편의 시설면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낙후한 건축물로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에도 이용에 커다란 장애를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계획 방향설정의 잘못은 결국 건축계획의 대전제 자체가 인간생활과 건축공간의 대응관계를 푸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할 뿐 아니라 건축가가 건물계획 단계에서 건축 공간 속에서 일어날 각종 행위 자체를 무시한 채 건축주의 권위나 매매시 재산적 가치만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생활과는 전혀 무관하거나 극히 영향이 적은 부분에 엉뚱한 투자를 하게 하고, 공간의

효용가치가 낮거나 거의 없는 실들을 체계 없이 나열한 불합리한 계획을 낳게 한다. 이는 '지식체계'로서의 목적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을 중시하는 건축계획의 기본 개념마저 잘못 이해하고 건축을 하겠다는 말과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건축이 실제 건물의 이용자 편의 위주로 되어야 한다면 이용자가 단 한 사람일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결국 다수를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다수 중에서도 다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처한 이용자를 기준으로 계획이 진행되어야 모두에게 편리한 건축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용자가 가장 불리한가? 그는 당연히 가장 많은 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이나 어린이, 기타 노약자 등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장애인라고 하면 우선 영구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연상하기 쉬우나 사실은 의외로 단기적인 혹은 일시적인 장애요인을 가진 장애인에 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즉, 그 장애요인이 반드시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는 무관하면서도 시설을 이용하는데는 영구 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 양손에 물건을 가득 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문의 개폐방법이 양손 혹은 한쪽 손의 사용에 전혀 장애가 없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그는 장애인가 되고 말 것이며 움켜잡는 힘과 약한 어린이들에게 Handle식 손잡이는 Lever식 출입문 손잡이보다 당연히 사용상의 많은 장애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실로 수 없이 많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들이다. 건강한 주부라 할 지라도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한 계단 앞에서는 순간적으로 장애인가 되고 말 것이며, 임신부가 해산을 하기 전까지는 건장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계획된 시설들을 이용하는데는 역시 일시적인 장애인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수많은 소위 '건강한 장애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가들이 공간의 계획 방향을 설정할 때 항상 가장 건강한, 그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에서 계획자만큼 지능적인 사람만이 그 시설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모든 기준을 결정해 버리는 우(遇)를 범하게 된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은 행위에 전혀 장애를 느끼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유익할 뿐이지 결코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것 이 아니다. 계단이 없는 출입문을 만들고 다소 폭이 넓은 문을 제작하며 Handle식 손잡이 대신 Lever식 손잡이를 장착한다고 해서 반드시 건축비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며, 각종 편의 시설 및 공공 시설을 가장 접근이 용이한 대로변, 1층 부분에 배치하고, Wheelchair사용자가 일반 보행자와 마찬 가지로 건널 수 있도록 건널목의 도로 경계석 높이를 낮게 계획하는 것이 결코 두발로 자유롭게 걸 어다닐 수 있는 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이용상 어떤 불편을 참아 달라는 것을 요구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볼 때, 건축계획방향의 설정은 반드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장애인 등 노약자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이용자 모두를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건축계획이 이루어질 때 비로 소 모든 시설의 이용자가 건축계획대상의 중심이 된 가장 훌륭한 건물이 탄생될 것이고 이러한 이용상 기능이 훌륭한 건물일수록 그 어떤 시각적 미(美)만을 갖춘 건물보다 아름답고 사랑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가장 인간적이며 인간을 위한 건축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모두를 위한 건축

‘장애물이 없는 건축이 모두를 위한 건축이다’

장애인을 위한 크고 작은 건축적 대안이나 이들을 위해 특별히 건축된 건물 등을 지칭할 때 우리는 과거에 흔히 ‘장애인을 고려한’, ‘장애인에 친숙한’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용어는 대부분 장애를 지닌 이들을 위해서는 일반인과 별도로 격리된 특별한 건축적 대책이 필요한 것처럼 사용되었다.

인간은 누구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자신을 자라게 한 주변의 모든 사회적 토양속에 묻혀서 삶의 전부를 그 속에서 보낼 지극히 상식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떠한 장애를 지닌 사람도 우선 우리의 사회 공동체속으로 재통합되어야 한다.

‘Barrier Free’란 사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이 즉, 모든 연령층과 모든 장애인가 이용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주지 않는 모든것을 지칭한다.

‘Barrier Free’란 장애물 없이 만들어져 모든 국민이 생활공간속에 있는 모든것을 다른이의 도움없이 스스로 독립적이고 제한없이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rier Free’란 항상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한 주택을 예로 들면 단순히 출입문의 폭이나 쓰레기장과 주차장 접근로에 한정되어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이 집을 방문 하여 이용하는데도 전혀 장애가 없어야 한다.

‘Barrier Free’란 공동의 생활공간속에서 공생하는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며 의무이다.

‘Barrier Free’란 ‘필요 이상의 것’도 아니지만 ‘가능 이하의 것’도 아니다.

‘Barrier Free’란 일반적인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고려한 면밀한 사전 준비이다. 한 건물이 건축되어 질 때 그 속에서 태어나서 늙어 갖가지 능력이 감퇴하여도 가능한 한 최대로 오랫동안 자립하여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의 주도한 대비이다.

‘Barrier Free’란 융통성이다. 개개인에게 적합한 작업대의 높이나 문의 손잡이 형태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다.

‘Barrier Free’란 개체로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생활 영역에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주택에는 물론 주거지역, 공공 교통시설, 학교, 관공서, 백화점등 각종 공공시설, 직장, 놀이터등 어느곳이나 장애를 지닌 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한다.

3. 격리와 통합

장애인을 일반인과 격리시켜 교육시키고 일정한 지역에 한정하여 거주하도록 사회가 강요하는 것은 장애인을 우생학적 차원에서 격리 수용해 다시는 가족과 그들이 자라온 토양속으로 되돌아 갈 수 없게 만들었던 Adolf Hitler의 정책 보다는 크게 개선된 것이라고 자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및 수용(?) 시설이 결국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일반인과 통합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박탈하는 모순을 유발 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선진 제국에서는 현재 다양한 각도의 장애인 통합운동이 교육, 직장, 주거분야 등에서 전개되고 있다.

교육시설중 대표적인 통합이 이탈리아의 경우이다. 이탈리아는 1970년대 초반까지 존재하던 지체장애, 시각, 청각,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와 학습 및 정서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을 장애아동의 사회 재통합에 장애물이 된다고 인정하여 1977년 8월 4일 공포·발효된 교육법 시행령 제517조에 의해 모두 해체하고 일반 학교·학급에 100%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2명이내의 범위에서 장애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학급에 장애를 지닌 아동들이 입학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교육법 시행령의 적용 초기에 일반 학생들만을 위하여 건축되어진 모든 학교시설에 대한 개수 명령이 하달되었고 새로이 건축되어지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건축지침이 제시되었다. 기존 계단 옆에는 경사로가 부설되고 2층 이상의 건물에는 모두 엘리베이터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학급에는 교과목에 따라 특수교육을 전공한 보조 혹은 순회교사가 학습을 지원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가능한 한 학급·급우로 하여금 공동으로 장애아동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모으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되었다. 교육이 끝나면 다시 일반 사회로 환원되어 상호 보완적인 삶을 살아야 할 훈련과정이 학교내에 마련된 것이다.

생활교육에 잘 적응하는 학생들은 단절된 기숙사에서 사회로 환원된 '통합요'라는 소규모 공동주거에서 등하교를 연습하고 여기서 성공적인 자립 가능성을 확인 받으면 '그룹홈'이나 일반인으로서의 사회 재통합이 이뤄지도록 제도화가 정착되어 있는 곳이 이웃 일본의 장애인 사회통합교육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열린교육, 열린사회를 우리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장애인 대학 특례입학제도가 시행되어 일반학생과의 통합수업이 마련되었다고 이해 하고 싶다. 진정한 통합의 완성을 위하여서는 수없이 많은 관념적,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중 건축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몇 가지 근원적인 문제해결책을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제안한다.

4. 장애인 교육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첫째, 문제의 지적보다는 대안의 발굴과 제시가 더 시급하다.

가정이나 일반 건축물(특히 서비스업 용도의 건물)에서 흔히 접하던 양변기, 엘리베이터, 냉·난

방기, 무선전화기등 크고 작은 편의시설들도 학교에서는 사례를 찾기가 힘이 들고 일반 시설물에서 는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낙후한 건축시설물과 교구들로 가득찬 곳이 기존 학교시설이요 우리교육현장의 실상이라는 것은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널리 알려진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인에게도 불편한 이러한 시설들이 장애인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또다른 장애물이라는 사실은 당연한 연구의 결과일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문제의 지적보다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적지만 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수치중심의 관료주의보다는 안전 중심의 합리주의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

일정한 계단의 너비와 높이에 대한 정해 놓은 치수가 그대로 적용되었는가를 따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계단코 등의 형태가 보행장애인에게 적정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너비와 높이가 안전계단 범주내에서 설계되어 있느냐가 검토되어야 한다. 난간의 연속성이 안전에는 더욱 중요하며, 전 캠퍼스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유도용 점자블럭이 설치되었느냐를 따지는 것은 자칫 문제 해결을 관료주의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위험부담이 따르므로 위험한 장애 요소마다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사용하기 편리한 승강기가 있다면 구태여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경사로의 유무를 따져 시설미비를 지적하는 것은 합리주의적이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원봉사자와 공익요원의 활용

언어와 청각장애인만이 상대방과 대화할 때 장애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도 생소한 외국인과 대화할 때 그나라 언어에 능통하지 못하면 그와 있는 동안은 영락없는 장애인이다. 이때는 흔히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통역이라는 것을 활용한다. 유럽 각 국의 학교에서는 장애인의 이동, 강의 등 학교생활을 지원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학교당국은 물론 각종 시민운동 단체, 장애인 단체, 국가 복지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인 공익요원의 배치이다. 이는 국내에서도 적용 가능한 제도로서 해당 학교의 기관장이 해당 국가 기관에 매학기 마다 공익요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배치된 공익요원은 한 학기 동안 학교생활을 지원할 학생을 선정받아 군복무를 대신한 봉사 활동을 하게 하는 방식이다. 학교 자체에서는 근로장학생제도를 이용하여 학우로 하여금 필요시 일정한 특수교육(수화등 장애인의 특수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케 한 후 학교생활을 지원케 하면 된다. 또한 국내에서도 널리 활용중인 자원봉사자 시민·종교단체나 장애인 협회 등을 이용한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각급학교 시설기준령의 개정요청

각대학을 대상으로 몇몇 지적한 내용들의 개선을 요청해도 미처 발견되지 못했거나 지적하지 않은 문제점은 그대로 남게 마련이다. 때문에 일시방편에 불과한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기준령에 장애인 관련 시설기준은 삽입,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교육부에서 제정,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각급학교의 시설기준령의 개정으로 장애인이 모든 일반학교에서 수학가능하도록 각종 교육시설을 완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장애인 특례입학생을 받아들인 대학들이 그들이 내린 용단에 대한 용기를 잊지 않고 더 넓게 문호를 개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기준이 질타에 앞서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목표를 정해주고 달리도록 요청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이다.

대학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모른다.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이 선불리 서두르면 오히려 시행착오로 인한 폐해만 가중될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기준령 보완이 이뤄지기 전까지 관련 단체에서 시설보완에 대한 건축적인 지침을 제시하기를 제안한다.

5. 기타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 경사로(복도)의 유효폭 120 - 150이상(교행의 최소폭)
- 양측 출입문사이 120 - 150이상(미닫이 120, 여닫이는 휠체어 길이인 150이상 소요)
- 도서관 차단기의 폭 - 별도의 출입구가 병설되어 있을 경우 무관
- 승강기의 조작판 설치위치와 충표시 확인 가능 유무에 관한 내용 보완
- 에스컬레이터 - 보행장애인(특히 시각장애인)에게는 위험한 장애물인데 충수 안내 점자표기 설치 유무를 질의한 의도는?
- 화장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과 변기의 위치와 휠체어 회전가능성 유무 확인
- 장애인 전용화장실 보다는 장애인도 사용가능한 화장실의 확보와 확충을 권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
- 편의 시설부족은 대학의 전반적인 문제점, 시설의 전반적인 질적수준 향상 유도
- 전반적인 유도불력 설치보다는 실기능을 구분할 수 있는 바닥마감재의 질감변화와 점자 안내 표시의 활용

토론 4

장애인 특례 입학 제도 실시에 따른 교육 환경에 관한 장애인 특례입학자 보고서

김형수(연세대학교 국문학과 재학생)

여는 글

이 글은 철저하게 장애인 특례 입학 제도의 장애인 특례 입학 대학생의 입장에서 쓴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모든 장애인 학생들-바꿔차 장애인 학생 자체 시각·청각 장애인 학생들-의 몸으로 부딪치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들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그와 아울러 지금 현재 제일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1. 문제 제기

학교 당국(연세 대학교)은 우리(장애인 대학생)를 동등한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가?

1) 우리는 학생으로서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 우리는 학생으로서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의 공적 환경(시설, 정보, 행정, 복지 등)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Access Right)를 누리고 있는가?

2) 우리는 학생으로서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가?

- 우리는 학생으로서 교육 환경에 있어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고 있는가?

- 우리는 학생으로서 교육 환경에 있어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자유권을 누리고 있는가?

~ 자유권에 관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누리고 있는가?

2. 문제 인식

우리는 동등한 교육의 주체자로 인정받고 있는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학교 안에서 동등한 교육의 주체자로 인정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여기서 동등하다는 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일한 결과나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올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필요에 적합한 가장 공평한 여건에서 똑같은 수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동등함을 뜻한다.¹⁾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 9조에는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본권마저 억압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학 내의 교육적 환경 속에서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물리적 장애물로 인하여 다른 학우들과 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장애인 특례 입학 제도를 통해 '대학 입학자중 일정 정도의 대학 교육에 관한 학습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정원 외에 특례 입학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례 입학 대상자는 주로 장애 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이 될 것이라고 하고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교육 과정상의 특성이나 평가보고 또는 평가 방법상의 문제로 그 동안 대학 진학이 제한되었던 장애인들의 고등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장애인들의 능력 개발과 사회적 재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교육부는 표면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장애인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받을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교육부가 공문 양식을 통해 각 대학에 '장애인 특례 입학'을 실시 할 것을 권장 사항으로 한 것은 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와 같이 장애인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국가의 책임은 방기한 채 장애인 대학 교육의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기는 행정 편의주의의 발상이며 여론 무마용의 전시 행정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점이나 그것을 입안한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그 권장 사항을 받아들여서 시행한 대학의 태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에서 이것을 받아들였다 함은 그 제도가 떠넘기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분명한 태도 표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특례 입학을 실시하는 몇몇 대학의 태도는 이런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은 커녕 할 수 있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다는 자세이다.

오히려 우리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精緻한 응용방법을 教授研究하며 지도적 인격을 고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 대학은 입시요강에 대학교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자 또는 원서 접수 시에 사전 면담을 통해 과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책임을 회

1. 교육의 주체자라 함은 교육을 받는 이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획득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당국은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장애인 학생들에게 마치 원래 베풀지 않아도 될 그런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태도까지도 표방하는 것이다. 대학은 장애인 특례 입학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동안 '정상인' '장애인'이라는 육체적인 지표에 의해서 선 그어진 채 관행화 되었던 부당한 사회적 규제들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되돌려 놓는데 있다는 점과 함께, 장애인의 대학 입학이 금지되거나 제약되어서는 안되는 까닭이 우리가 장애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장애인일지 모르나, 교육의 주체자인 학생으로서는 결코 장애인이 아니다.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장애인일 뿐 절대 교육을 받는데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학 측의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 유명한 대기업에 손쉽게 들어가는 학생들을 키워 내는 일이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내는 데에 있다면, 우리를 당당한 교육의 한 주체자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만 지금 당장의 물리적 교육환경 조성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전환이야말로 위 문제제기의 가장 기본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학생으로서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여기서 동등한 교육의 권리라 함은 모든 교육적 환경-시설, 정보, 수업, 대인관계, 복지-의 자유로운 접근권(Free Access To Right)을 말한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교육의 권리에 대해 철저하게 차별 당하고 있다.

그것의 가장 극명한 예가 당 학교(연세 대학교)의 중앙 도서관이다.

대학의 중앙 도서관이라 함은 다른 모든 교육 환경 중에서 학생의 입장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환경임에도, 당 학교의 도서관은 첫 입구부터 철저하게, 특히 바퀴차 장애인이나 지체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제한구역이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장애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학교 당국의 무지에 가까운 인식의 결핍 때문이다.

왜냐하면 중앙 도서관에 들어서는 곳에는 경사로가 우회하여 설치되어 있으나 그 경사로를 거쳐 도서관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본 열람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하철 1,2호선 식의 개찰구를 통과해야 하는데, 바퀴차를 타는 장애인 학생들은 그 폭이 좁아 통과하기가 불가능하다. 경사로가 바퀴차 장애인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위해 마련한 것일진데, 또 하나의 장애물을 그대로 둔다는 사실은 학교 당국의 이러한 의식의 부족과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연히 말해 주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개찰구를 어떻게든 통과하여 들어섰다 하더라도 도서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2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우선이라는 인식이 없어 많은 다른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용하고 있어 항상 장애인 학생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또 한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승강기를 도서관 전 층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기존 시설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것은 비단 중앙 도서관뿐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 도서관에는 시각 장애인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 도서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청각 장애인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시청각 자료 또한 그 시청각 자료가 청각 장애인을 위한 것이기 보다 그냥 대학의 수업과 연구의 필요에 의해 구비해 놓았을 뿐이다.

학교가 장애인 학생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함은 학교가 각과에 각기 다른 전공 서적을 구비해 주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는 다른 학생들과 이용하는 정보의 매체가 다를 뿐인 것이다.

또 하나의 커다란 물리적 장애는 학교 건물 내 외의 동선에 계단과 턱이다. 계단과 턱의 존재는 바퀴차 장애인 학생에게 있어서는 넘지 못하는 강, 다리도 배도 없는 황하와도 같은 강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 다음에 절실한 문제가 강의실의 물리적 장애 문제이다.

많은 바퀴차 장애인 학생들은 계단 동선밖에 없는 강의실에는 접근이 불가능해 수업권에 막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학생들은 또 하나의 교육 주체인 선생님과 긴밀한 의사 소통이 그 누구보다도 긴요하다.

그러나 선생님들조차도 장애인 학생들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학생들은 그러한 물이해에 선생님과의 의사 소통 접근을 꺼리고 있으며 선생님 또한 의사 소통의 노력을 보여 주시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 점이 장애인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있어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요컨대 장애인 학생들이 겪는 이러한 물리적 사회적 장애는 사실 대학 당국의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물이해와 인식의 의지 노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시 한 번 대학이 우리를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장애의 문제는 비단 교육받을 권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한 학생의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존권-안전권-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만성적인 공간 부족과 아울러 위험한 계단들, 차도와 인도의 무분리, 그리고 사람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하루하루의 학교 생활을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하고 있다. 사실 많은 바퀴차를 타는 장애인 학생들, 지체 장애인 학생들, 시각 장애인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위험과 두려움을 피부로 경험하고 있다.

3. 문제 해결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접근권 보장

이 문제의 해결 방식에 있어 대학이 가져야 할 태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에 따르는 노력이다.

대학에서의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의 당연한 보장은 대학이 우리 사회의 학대된 축소인 점에서 판단할 때, 접근권은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할 수는 시민권, 사회권의 권리의 보장이다.

물리적 시설의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학 당국이 드는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정말로 자기 모순적인 대답일 수밖에 없으며 대학 스스로 장애인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기존에 시설을 100% 활용을 하지 않으면서 예산 타령이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이며 인식의 문제이다.

1. 기존 시설의 100% 활용

우리는 주장한다. 지금 당장의 전반적이고 완전한 물리적 장애의 해소가 어렵다고 한다면 기존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시설이라도 100% 활용하라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서관의 경우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총 운행²⁾을 하지 않는 다든지 도서관 개찰구 문제 또한 다른 행정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내외의 장애우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과 동선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 체제를 갖춤으로써 기존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³⁾

이러한 물리적 장애와 관련하여 당학교에서 이해하지 못할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직접적이고 시급한 문제를 코앞에 두고 학교 東門의 외곽 도로 건설 계획의 발표등 학교의 대외적인 외양 꾸미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왜 학교 당국에서는 우리 날에서 장애인들의 물리적 장애가 제일 없는 학교로 만드는 것이 곧 세계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이는 외국의 일류 대학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강의실 문제와 관련하여 수업권 제한이라는 문제를 한 번 짚어 보면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그러한 수업권의 제약이 전공 과목일 경우에는 장애인 학생들은 입학은 허용했지만 졸업은 할 수 없다는 암묵적 선고와도 같은 것이다. 이 수업권 제약의 문제는 아래에 행정적 시설의 장애를 볼 때 더욱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학생의 안전권 보장

한편 대학 아무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권은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

장애인 학생들이 매일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늘 벼랑 끝을 가고 있는 듯하다면 어떻겠는가?

2. 다른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건물도 마찬가지 설정이다.

3. 실제로 당 학교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장애인 시설이 미약하나마 되어 있고 이용 가능한 동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안내판이나 안내서가 없다.

학교 당국에서는 교수님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에 있던 경사 동선을 계단 동선으로 바꾸는 공사를 하면서 똑같은 교육의 주체자인 우리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우리는 대학이 우리의 최소한의 안전권이라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첫째로 계단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승강기나 리프트 경사로가 하루바삐 설치되어 하겠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다면 계단 양쪽에 둑근 손잡이를 설치하고 그 양끝에는 점자 정보를 넣어 시각 장애인 학생들의 이용을 돋고 계단의 시작과 끝부분에 점자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건물밖에는 최소한 차도와 인도를 인식할 수 있는 분리 점자 블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 행정적 시설의 장애 문제

이러한 물리적 장애가 가져오는 접근권 박탈은 또 다른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권리의 박탈을 야기한다. 바로 대학에서의 행정적 시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즉 학사 관리 학업 수행에 있어 수반되는 행정적 처리를 물리적 장애 또는 인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적절하게 행하지 못함으로서 다른 학생들과의 올바른 성취 경쟁에서 언제나 차별적으로 뒤쳐진다.

-행정의 접근권 보장과 그 보완

장애인 학생들의 접근권 문제에 있어서 행정 시설이 가지는 별개의 의의는

이 행정 시설이 물리적 장애의 문제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강의실의 물리적 장애로 발생하는 수업권의 제한에 대한 해결책
 이를 학사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적 시설로 제시해 보면 장애우 학생들에게는 수강 신청의 우선권을 주어 과목의 강의실 배정 전에 미리 수강 신청을 받아 물리적 장애가 없는 강의실을 장애인 학생들이 수강 신청한 과목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에게 미리 그 장애인 학생에 대한 면밀한 정보를 주어 서로 의사 소통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학교에 있는 전산망을 이용하면 정말 손쉽게 이를 수 있는 일이다.

한편 수업권 제약이라는 문제에서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시각 장애인 학생들과 청각 장애인 학생들의 정보 이용 문제이다.

청각 장애인 학생의 경우는 강의 내용을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수화 통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시각 장애인 학생일 경우에는 강의 점자 점역자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현실적 대안을 찾아보자. 물론 학교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일리이겠지만 그것 또한 예산 문제에 부딪친다면 학교 내에 있는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아래에서 따로 살펴볼 것이다.

-도서관 이용 문제

장애인 학생이 직접 서가 열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장애인 학생들은 도서 대출에 있어 그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기한도 다른 학생들보다는 훨씬 길게 해주면 장애인 학생

들의 정보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장애인 학생 지원 활동 통합 지원 시스템

이 장애인 학생 지원 활동 통합 지원 시스템은 이 장애인특례입학제도 실시의 현상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다.

이것은 대학 내의 풍부한 인적 자원의 활용이며 그럼으로써 대학의 사회 통합 교육이라는 교육적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시스템은 학교 내에 있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전산망을 이용하여 장애인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내에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 학생들과 그에 지원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연결하여 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학내 지원 활동이 크게 배양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 통합이라는 교육적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닫는 글

우리는 이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현실적 대안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

그러나 그 현실적 대안도 정말 대학 측에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도 지금의 한시적 해결책일 뿐이지 장애인 학생들의 올바른 해답이라고 할 수 없다.

올바른 해결책은 전반적이고 완전한 교육 환경의 개선 교육하는 주체자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이다.

지성의 최고 텁이라고 자처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대학은 청각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수화 통역자 한 사람을 채용하기보다는 교수 연구실을 깨끗이 청소해 줄 청소원을 한 사람 더 채용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를 마련해 주기보다는 학교 선전을 위한 선전물을 외양도 번지르르하게 열심히 만들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공중전화는 한 대도 없는데 학교의 이익 사업을 위해 기념품 판매소는 만들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그래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받은 자들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움직일 것이다. 억압하는 사회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갇혀진 우리 자신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데까지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은 언제나 정당하게 논리적으로 움직일 것이며, 당당히 요구할 것이다.

보도자료

장애인특례입학실시 대상 대학교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장애 학생의
대학생활조사 발표회

일시 : 1996. 4. 18(목) 오후2시~5시

장소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강당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1회

순서

대한민국
법률학회

(한국법학자연맹)

+

■ 사회

수석동의

金正烈(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발표

金聖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한신대학교 교수)

■ 토론

강병근(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천종태(장로회신학대학교 교학과장)

최종균(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 사무관)

김형수(연세대 국문학과 재학생)

■ 종합토의

- * 별첨 : 1. 장애 학생의 대학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개요서
- 2. 장애인특례입학 대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개요서
- 3. 장애인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 기준에 근거한 교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기준
- 4. 조사 요약본

I. 장애 학생의 대학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 개요서

1. 조사배경 및 목적

보고된 바에 따르면 장애인 대학 특례 입학 제도 시행 2년째인 현재, 연세대학교를 비롯하여 24개 대학 27개 캠퍼스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장애 학생이 3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아직 그 수가 많지 않아 '소수'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어서 그런지 장애 학생의 대학 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대학에 다니는 장애 학생들은 학교생활이 너무 어렵다거나, 혹은 쉽지 않다고 종종 불편을 말하곤 한다. 장애 학생들이 주로 느끼는 대학 생활의 어려움은 편의시설 등 이동의 문제, 학사 관리 등 행정적인 측면, 교수나 학우 등과의 인간관계 등 장애인의 접근권(Right to Access)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통학문제부터 시작하여 강의실로의 이동, 식당, 화장실, 도서관 등으로 이동하는 연속적인 동선을 제외하고라도 강의실조차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은 장애 학생에게 있어 대학생활 자체가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의 경우 이동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학 내 전반에 걸친 정보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고 청각 장애인은 대화가 통하지 않아 정보 습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점은 장애인의 대학 내에서 교육의 권리를 갖는데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 대학 특례 입학 제도를 실시하는 14개 대학 18개 캠퍼스에 대한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조사와 병행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장애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전반에 걸친 어려움 등에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며 특히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장애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1995학년도에 장애인 특례 입학을 허용한 전국 6개 대학 중 장애 학생의 명단 입수가 가능한 5개(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대구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대학의 95학번 학생 83명을 대상으로 1996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 까지 20일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특별히 95학번을 선정한 이유는 장애 학생이 1년 동안의 학교생활로 인해 학교 내에서의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소책자를 발간하고 각 대학에 장애 학생의 원활한 대학 생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학교 내의 교육 환경 개선과 장애인 편의 시설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하고자 설문 조사를 했다.

2. 주요 조사 내용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 학생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이동의 어려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했다. 그 내용은

-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 대인관계의 어려움
-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
- 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
- 강의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
-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
- 학교 건물 내 계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
- 주차 시설 이용의 어려움

- 공중전화 시설 이용의 어려움
- 강의를 듣는 데의 어려움
- 학교생활에서 종합적인 곤란 사항 등 1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조사를 했다.

3. 조사의 설계

- 가. 조사 기간 : 1996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 나. 조사 대상 :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대구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 등 5개 대학 95학번 장애 학생 83명
- 다. 조사 방법 : 조사자와 직접 면담(전수조사)
- 라. 조사 내용 : 장애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설문 조사
- 마. 조사 원 : 장애우대학생 10명
- 바. 설문 범위 :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대학 내에서의 장애 학생의 학교 생활

4. 자료 분석 및 처리

설문은 각 질문에 대해 보기지를 제시하고 이들 보기에 대한 설문 당사자의 우선 순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선 순위가 낮아질수록 무응답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설문 당사자가 제시된 보기 이외의 대답을 할 경우 이는 기타로 분류하여 별도로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5. 조사의 한계점

모집단의 부족 및 낮은 설문응답률로 인하여 관측 자료 수가 적었으며, 따라서 장애 유형별 분석이 불가능하여, 전체 관측 자료를 대상으로 한 빈도수분포(Frequency Distribution)분석을 하였다.

II. 장애인 특례 입학 실시 대상 대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 보고 개요서

1. 조사 배경 및 목적

연세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 대구대학교 등 95년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도 시행학교인 6개 대학을 포함하여 96년부터는 21개 대학이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사에 앞서 각 대학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 등은 95년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건물 외부에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장애인이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쟁점으로 만들고 각 대학의 관심 유도,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하는 압력행사를 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대학특례입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21개 대학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법 34조'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건물 외부의 계단과 강의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시켜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조사와 이를 위한 모든 사업방향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배려적 차원에서 접근되며 보다는 우리 사회의 국민으로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 차원에서 요구하고,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장애인에게 편한 시설이면 일반인도 편하다는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2. 주요 조사 내용

이런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시행하는 대학을 파악하고 대학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사 대상 대학은 강남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 경희대학교 수원, 고려대학교 서울, 고려대학교 서창, 공주대학교, 나사렛신학대학, 대구대학교, 대불공과대학, 명지대학교 서울, 명지대학교 용인, 부산대학교, 상명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 연세대학교 원주, 용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주우석대학교, 제주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 한양대학교 안산 등 18개 대학 24개 캠퍼스로서

- | | |
|--|--------------|
| 가. 노면과 보도 등 학교 전체내의 편의시설 문제와 자원활동자와 장애인을 연결하는 정보통신망 구축 | |
| 나. 건물 외부 계단(경사로) | 다. 출입문(구) |
| 라. 강의실 | 마. 도서관 |
| 바. 복도 | 사. 화장실과 세면대 |
| 아. 승강기 | 자. 건물 내부의 계단 |

차. 공중전화 등에 대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계단과 경사로 출입문, 강의실, 도서관, 복도, 화장실, 공중전화, 승강기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의무조항이며 세면대는 권고조항이고 노면과 보도, 자원활동 정보통신망 구축 등을 첨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실태를 조사했다.

3. 조사의 설계

- 가. 조사 기간 : 6월 20일-7월 30일(40일간)
- 나. 조사 대상 : 장애인대학특례입학 실시 학교
- 다. 조사 방법 : 조사자에 의한 실측(전수조사)
- 마. 조사 내용 :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와 문제점
- 바. 조사 원 : 장애우대학생을 비롯한 자원활동자(5-7인 1조로 총 13개조 65명 참가)
- 사. 지도감수 : 권도용(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조홍식(서울대 사회복지과 교수), 조성룡(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사무국장),
- 아. 조사 도구 : 줄자, 장갑, 카메라

4. 조사 대상

애초 18개 대학 24개 캠퍼스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된 대학은 강남대학교, 경희대학교(서울·수원), 고려대학교(서울·서창), 공주대학교, 나사렛신학대학, 대구대학교, 명지대학교(서울·용인),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 용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주대학교, 한양대학교(서울·안산) 등 14개 대학 18개 캠퍼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5. 자료 분석 및 처리

조사된 자료는 백분율을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1차적인 분석과정을 가졌으며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했다.

6. 조사의 한계점

본 조사의 한계점은 첫째 학교 거부로 실태조사를 하다가 자원활동자들이 쫓겨나거나 아예 교내진입을 못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못했고 둘째 계단에 대해 조사하려면 높이·넓이, 유효폭, 휴식 참 등 조사할 항목이 너무 많아 조사자들이 간혹 빠뜨린 경우가 있으며, 셋째 편의시설 혹은 건축과 관련한 전문적인 용어를 이해 못한 자원활동자들의 실수 등으로 나타난 조사의 정확성 등이 본 조사의 한계이다.

III. 교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 기준

'장애인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 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세부 설치 기준을 정한 것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장애인편의시설의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세부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고 동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기존의 시설 중 주요 공공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5년 또는 10년 이내에 편의시설 및 설비를 정비해야 한다.

장애인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 기준에 따르면 교육시설(모든 학교, 도서관, 장애인특수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원, 학원)에는 경사로,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장애인안내표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세면대는 권고사항이다.

경사로 :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로 해야 하며 유효폭은 최소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경사로의 길이 10m, 고저차가 75cm가 넘을 때마다 휴식참(참의 길이는 1.5m)을 설치해야 한다.

손잡이 설치 중요. 점자유도블럭 및 점자 안내표시, 장애인안내표시

출입구 : 출입문의 유효폭은 최소 90cm 이상으로 하고 문턱이나 단차를 두지 않는다.

손잡이는 수직 혹은 수평의 막대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복도 : 복도의 유효폭은 최소 1.2m 이상으로 하고 양옆으로 교실이 있는 경우 1.5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수의 휠체어 사용자가 있는 경우 1.8m 이상으로 한다.

단차를 두지 말고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은 평단한 마감으로 한다.

점자유도블럭 설치

계단 : 계단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고 단 높이는 15cm - 16.5cm, 너비는 30 - 33cm로 하고 미끄럼 방지용 경질 고무류를 사용하여 계단코를 마감한다.

반드시 연속적으로 손잡이를 설치(높이 80-85cm)

계단에는 계단 높이 1.8m마다 참을 둔다.

계단 손잡이 맨 끝에는 충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점형유도블럭 바닥재

승강기 : 1.5×1.5m 너비

승강기 설치물은 0.8-1.2m 위치에 설치

승강기 내부의 손잡이 위치는 80-85cm에 설치

점형 유도블럭으로 바닥재 마감

화장실 : 5개 이상의 대변기가 설치된 시설에는 반드시 장애인용 대변기를 설치
출입구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
출입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고 화장시내는 1.0m×1.8m 이상으로 한다.
대변기와 소변기 양 옆에는 수직 및 수평 손잡이 설치

주차장 : 시설내 부설주차장 대수의 1%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
(10미만 제외)
주요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
주차장 너비는 3.3m×5m
점자 유도블럭 설치

장애인안내표시 의무